

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이 세 열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본 조례안은 서울창의상의 제정목적에 부합하고, 행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수상부문을 조정하여 서울창의상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주요내용은 수여대상에서 투자·출연기관 직원을 제외하여 시민, 공무원(자치구 포함)으로 하고(안 제2조제1호), 수상부문 간소화 및 연1회 시상(안 제3조), 심사위원회 운영관련 위원구성강화, 직무대행내용 추가, 위촉해제 사유 등을 명시(안 제5조)하였고, 선정 심사기준에 행정안전부 규정 반영(안 제10조), 수상등급별 포상금 기준액을 통일(안 별표)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